

# 건설업 벌칙규정



## 연재순서

1. 벌칙의 종류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② - 이번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벌칙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②

### 2.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89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나)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2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마.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자.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차.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8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카.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0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거.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건설업관리지침 중 제7장)

####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 법 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 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원·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2) 법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다.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건설업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을 선택한 결과 제재처분을 받을 업종이 다른 등록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고가 있는 때
- (2) 과징금부과
  - (가)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83조에 따른 위반행위 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법 제82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별로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

- (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 (나)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 (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 처분하는 때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 ③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 (라) 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 이상의 사망사

- (1) 법 제83조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예)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처분일부터 3년 이내에 기술능력미달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시 발생한 때
- (2) 법 제83조제9호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3호의 사유가 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
- (3) 법 제83조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다. 나 (3)의 경우 시·도지사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3.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결정 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업정지는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6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1) 감경사유

##### (가) 처분횟수

-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

##### (나) 위반동기

-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 (다) 위반내용

-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2) 가중사유

##### (가) 처분횟수

-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

##### (나)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 (3) 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 (1), (2)에 따른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과징금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6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1) 감경 및 가중사유

영업정지기간 결정기준의 감경 및 가중사유와 같다.

#### (2) 감경 및 가중의 비율

감경 및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별표6에 정한 과징금의 6분의 1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 (3) 과징금의 산정

(가) 영 별표6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액제)은 위 (2)감경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징액으로 산정한다.

(나) 영 별표6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률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다) 직선보간법의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다. 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액 결정기준의 예외

- (1) 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를 위반하여 법 제82조의2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 (2) 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4. 과태료의 결정기준

과태료는 영 제89조 별표7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가. 감경사유

- (1) 처분횟수
  -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행되는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건설업자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

나. 가중사유

- (1) 처분횟수
  -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

다. 감경 또는 가중의 율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별표 7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 5. 제재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가. 시정명령

법 제81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은 해당 주기적 신고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할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나. 영업정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 6. 기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 등을 통지 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

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마.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이 진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을 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송받은 등록관청은 이미 이루어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지 3**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사례**

사례 1) 법 제16조 위반시, 도급금액이 4억 57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 업 정 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

$$\frac{\text{구역상한과징금율} - \text{구역하한과징금율}}{\text{구역상한도급금액} - \text{구역하한도급금액}} = \frac{16\% - 24\%}{5\text{억원} - 1\text{억원}} = \frac{-8\%}{4\text{억원}} = -2 \frac{\%}{\text{억원}}$$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text{도급금액} - \text{구역하한도급금액} = 4\text{억 } 57\text{백만원} - 1\text{억원} = 3\text{억 } 57\text{백만원} = 3.57\text{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3.57\text{억원} \times -2 \frac{\%}{\text{억원}} = -7.14\%$$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을

$$24\% - 7.14\% = 16.86\%$$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4.57\text{억원} \times 16.86\% = 0.770502\text{억원} = 7\text{천 } 7\text{백 } 5\text{만 } 2\text{백원} \approx 7\text{천}705\text{만원}$$

※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1천원미만은 버림

**사례 2) 아래조항 위반시, 재하도급금액이 29억 88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 업 정 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6. 재하도급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 제2호	4월	16	12	8	4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을

$$\frac{\text{구역상한과징금율} - \text{구역하한과징금율}}{\text{구역상한도급금액} - \text{구역하한도급금액}} = \frac{4\% - 8\%}{30\text{억원} - 5\text{억원}} = \frac{-4\%}{25\text{억원}}$$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text{도급금액} - \text{구역하한도급금액} = 29\text{억 } 88\text{백만원} - 5\text{억원} = 24\text{억 } 88\text{백만원} = 24.88\text{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을

$$24.88\text{억원} \times \frac{-4\%}{25\text{억원}} = -3.9808\%$$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을

$$8\% - 3.9808\% = 4.0192\% \approx 4.019\% (\because \text{건설업관리지침})$$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29.88\text{억원} \times 4.019\% = 1.2009\text{억원} = 1\text{억 } 2\text{천 } 9\text{만원} = 1\text{억 } 2\text{천만원}$$

※ 별표2 나목 비교란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선보간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1억2천9만원)”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1억2천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으로 하게 되므로, 과징금은 1억 2천만원이 됨